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본 보고서를 비롯하여 보건산업수출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khidi.or.kr>)

Tel : 02)2194-7300 (대표전화)

● 제 외국의 식품수출관련절차에 관한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식품산업진흥팀

Tel : 02)2194-7332, 2194-7488

독일의 식품수입관련제도 및 절차

1. 독일의 식품 수출입 동향	167
2. 독일의 수입식품검시기관	170
3. 독일의 식품 수입 절차	172
4. 독일의 식품관련 각종 제도	175

제8장 독일의 식품수입관련제도 및 절차

1. 독일의 식품 수출입 동향

독일 경제는 2000년 2.9%의 고성장을 실현한 후 2001년 0.6%에 그치는 등 계속 성장률이 저하되는 추세에 있다. 지출에서는 소비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약 0.5% 감소하여 통일 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투자도 약 6.4% 하락하여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04년도에 독일을 비롯한 EU국가들의 경기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4 독일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00년	2001년	2002년
경 제 성 장 륜 (%)	3.0	0.6	0.2
물 가 상 승 륜 (%)	1.9	2.5	1.4
실 업 륜 (%)	9.6	9.4	9.8

독일의 무역은 2001년 수출도 5,705억 달러, 수입은 4,927억 달러에 각각 달해 세계 2위 수출입국을 유지하였으며 독일의 2001년 미국에 대한 수출이 10.6%를 차지한 가운데 다른 EU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체의 55.2%를 차지하여 EU국가로의 수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EU미가입국에 대한 수출도 11.0%를 차지해 유

럽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1%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3.8%에 불과하였다.

독일의 식품산업부문의 수출은 기계, 화학품, 철강금속제품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도 독일의 과채류식품의 수출량은 약878톤으로 약1,861톤의 EU국가 전체수출의 약 47.1%를 차지하여 유럽의 주요식품수출국임을 나타내었다.

표 35 2003년도 국가별 과채류식품 수출 동향

(MT)

구 분	2003년	구 분	2003년
총 계	2,147,730	비EU전체	286,328
EU전체	1,861,402	폴란드	77,075
독 일	878,227	미 국	26,066
영 국	346,870	체 크	41,760
벨기에	201,132	노르웨이	26,641
프랑스	138,598	스위스	23,901

독일의 한국산 식품수입의 주요품목으로는 생선류식품, 곡물가공식품, 과채가공식품 및 견과가공식품 등으로 생선류식품은 105,720유로(2003/12), 107,090유로(2004/03)을 기록하였고 곡물가공식품은 198,260유로(2003/12), 132,650(2004/03)을 기록하였다.

한편 독일의 2002년도 연간 한국산 식품수입액은 동수산물가공식품이 1,011,640유로를 기록하였고 곡물가공식품은 1,216,160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생선류식품, 기타가공식품 등이 주요교역식품으로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표 36 2002년도 한국산 식품의 EU 수출 현황

(단위 : 천유로)

구 분	프랑스	화란	독일	이태리	영국	덴마크	스페인	EU
1. 산동물	-	111.46	1.81	-	-	-	-	113.27
2. 육류	78.12	683.26	-	-	-	-	-	1,391.51
3. 생선류	432.26	726.94	708.37	10,818	138.94	3,034.64	3777.29	54,023.63
4. 유제품	75.48	128.53	1.15	-	-	-	-	205.16
5. 육류	282.75	75.45	12.72	12.61	70.81	167.82	10.76	657.69
6. 화훼류	17.83	1,819.51	9.4	88.73	93.64	-	-	2147.43
7. 야채류	149.14	7.65	19.55	899.4	182.77	-	-	1,293.66
8. 과일/nuts	343.68	232.1	123.02	-	44.41	-	8.84	752.05
9. 커피/차/양념	20.39	30.83	61.1	12.16	31.66	-	50.34	219.51
10. 곡물류	-	9.74	3.94	-	37.96	-	-	51.92
11. 전분류	1.8	2.43	8.88	0.54	1.31	-	10.86	27.76
12. oil seeds	568.43	677.33	502.9	45.1	277.1	59.55	570.73	2,824.18
13. lacs, gums	1,824.97	24.25	128.45	361.8	201.31	2444.18	349.66	6,308.46
14. 야채생산물	-	-	3.79	7.74	-	-	-	28.49
15. fats	27.47	19.41	40.13	-	25.45	-	14.81	127.79
16. 동수산물가공품	3,498.4	2,433.21	1,011.64	937.6	2,979.9	519.38	15,606	41,691.85
17. 설탕/당과류	35.62	488.5	48.06	248.8	503.97	-	203.66	1,537.33
18. 코아 및 그 식품	148.87	-	72.6	-	1.46	-	-	222.93
19. 곡물가공품	692.03	718.45	1,216.16	15.27	2,392.3	23.94	30.54	6,335.24
20. 야채/과일/nuts가공품	158.72	195.2	242.12	207.8	137.64	15.34	53	1,029.19
21. 잡곡	125.26	217.89	2,937.81	88.45	1423.5	1.11	244.01	5,332.15
22. 음료/spirits/식초	162.26	201.32	162.89	23.81	637.07	-	412.07	1,602.03
23. 잡물	1,087.92	-	175.31	1.29	13.43	-	6.76	1,298.1
24. 담배	2,471.26	3.38	275.7	25.4	-	-	-	6,422.43
25. 소금/lime/cement	42.03	5.3	124.32	56.55	142.37	-	17.82	390.57

2 독일의 수입식품검사기관

1)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 농업부

(Bundesministerium fuer Verbraucherschutz Ernaehrung und Landwirtschaft)

○소속 : 독일 연방정부 중앙부처

○주요업무 : 독일식품법의 규정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업무
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성 감시 시스템 총괄업무

○연락처 : Rochusstr. 1 53123 Bonn, Germany

전 화 : (49-228) 529-0

팩 스 : (49-228) 529-4262

○인터넷주소 : <http://www.verbraucherministerium.de>

2)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청

(Bundesamt fue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 BVL)

○소속 : 독일 연방정부 독립기구

○주요업무 : 잠재적인 위험을 가진 물질이나 제품으로부터 식품안전성 관리업무
국내 및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검사업무

○연락처 : Rochusstr. 65 53123 Bonn, Germany

전 화 : (49-228) 6198 0

팩 스 : (49-228) 6198 120

○인터넷주소 : <http://www.bvl.bund.de>

3) 독일 연방 생물학 농림청

(Biologische Bundesanstalt fuer Land-und Forstwirtschaft)

○소속 : 독일 연방정부 독립기구

○주요업무 : 식물 보호 화학 물질에 대한 승인 담당

○연락처 : Messeweg 11/12, 38104 Braunschweig, Germany

전 화 : (49-531) 2995

팩 스 : (49-531) 299-3000

○인터넷주소 : <http://www.bba.de>

4) 독일 식품 감시관 연방 협회

(Bundesverband der Lebensmittelkontrolleure Deutschlands : BVLK)

○소속 :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청 관련 단체

○주요업무 : 적합한 식품표시의 개발 지원업무

식품이 독일/EU식품규정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독일 내 승인을 득한 식품 연구소에 관한 지원 업무

○연락처 : Herderstr. 1a 38350 Helmstedt, Germany

전 화 : (49-5351) 595301

팩 스 : (49-5351) 595302

○인터넷주소 : <http://www.lebensmittelkontrolleure.de>

5) 독일 Analytec 식품 연구소

(Analytec Labor fuer Lebensmitteluntersuchung)

○소속 : 독일 내 승인을 득한 식품 연구소

○주요업무 :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업무

검사결과에 따른 인증서 교부

○연락처 : Laufener Str. 873 83395 Freilassing, Germany

전 화 : (49-8654) 62322

팩 스 : (49-662) 438102

○인터넷주소 : <http://www.analytec.de>

6) 독일 Wulf Bostel 분석 연구소 (Analytisches Institut Wulf Bostel)

○소속 : 독일 내 승인을 득한 식품 연구소

172 주요국의 식품수입관리제도 현황 (1)

- 주요업무 : 미각연구, 신규식품 개발 업무
식품 감시, 식품 화학 분석, 식품 판정 업무
식품법의 요구사항 및 인증서 교부 업무
- 연락처 : Florianstr. 13, 70188 Stuttgart, Germany
전 화 : (49-711) 285280
팩 스 : (49-711) 2852855
- 인터넷주소 : <http://www.arotop.de>

7) 독일 Luebeck 화학 연구소 (Chemisches Laboratorium Luebeck GmbH)

- 소속 : 독일 내 승인을 득한 식품 연구소
- 주요업무 : 신규식품 개발 업무
식품 화학 분석, 식품 판정 업무
식품법의 요구사항 및 인증서 교부 업무
- 연락처 : Hochofenstr. 23-25, 23569 Luebeck, Germany
전 화 : (49-451) 307840
팩 스 : (49-451) 307-8449
- 인터넷주소 : <http://www.cll-gmbh.de>

3. 독일의 식품 수입 절차

독일을 비롯한 EU국가들은 포도주, 설탕, 곡물, 우유, 육류, 올리브오일, 과일 및 채소 등과 같은 대부분의 식품에 대하여 판매 지원을 제공하는 수입 인증서(AGRIUM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수입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신청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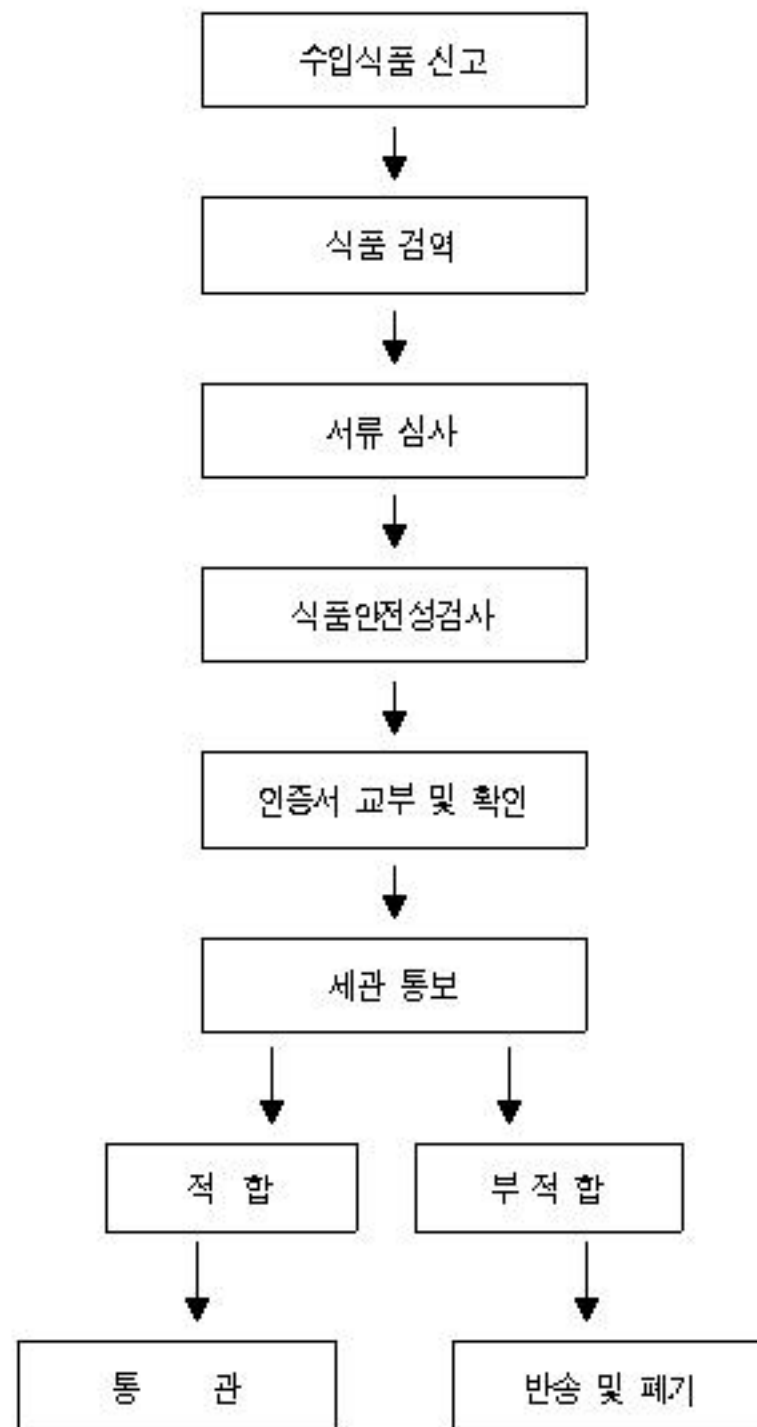


그림 20 독일 식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 Flow Chart

독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 농업부 및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입식품검사절차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① 수입식품 신고

독일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류제품의 경우, 해당국가의 관련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공보건수출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식물제품의 경우, 해당국가의 관련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식물위생수출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식품 검역

독일 항구 및 국경 검역소에서 육류 및 식물 검역 실시한다.

육류제품에 관한 엄격한 검사요구사항이 포함된 EU육류위생강령(89/397/EEC 및 93/99/EEC)에 따라 모든 육류제품은 철저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제품은 EU가 승인한 시설에서 수입되어야 하며 육류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가공식품도 공공보건수출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식물제품은 식물위생관리기준 및 EU통합판매기준이 포함된 EU식물위생강령(1148/2001)에 따라 모든 신선과일 및 야채는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③ 서류 검사

EU식품위생강령(Com. Reg.93/43/EEC)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EU지역에 대한 수입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해당식품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을 적용한다.

독일식품법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한다.

서류검사에 따라 검역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의심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은 식품안전성검사를 면제받고 통관절차를 거친다.

④ 식품안전성검사

서류심사결과 의심되는 식품(혐의식품)으로 분류되면 독일 식품안전청은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정부연구소 및 독일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식품 연구소에서 식품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⑤ 인증서 교부 및 확인

정부연구소 및 독일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식품 연구소는 식품안전인증서를 교부하고 독일 식품안전청은 이를 확인한다.

독일 식품안전청 및 정부연구소는 국내 및 수입식품에 대한 무작위 시료채취를 통해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한다.

독일 식품안전청 및 정부연구소는 금지 성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거래 관행과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제품의 일반적 특성을 평가한다.

원산지에 관계없이 국내외 제품 모두 해당 식품이 식품법을 위반하고 공공 보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언론에게 통지하여 상표명, 수입업자 또는 생산자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 세관 통보

독일 식품안전청은 식품안전인증서가 발급되면 독일 세관에 이를 통보하여 통관 절차를 밟도록 한다.

⑦ 통관조치

독일 세관은 관세납부 등의 관련행정절차를 거친 후 수입식품이 통관시킨다. 만약 수입식품이 부적합된 경우는 반송·폐기·재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독일의 식품관련 각종 제도

1) 독일의 식품법 및 관련제도

EU 회원국들의 식품 법률 상당수가 이미 EU 법률과 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건 관련 클레임 및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생리 물질들과 같은 영역들에 있어서는 아직 EU에서도 통합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2003년 여름에, 유럽 위원회는 이러한 공개적인 사안들에 대한 제안서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통합된 EU규정들은 빨라야 2005년 연초가 지나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및 사료에 있어서의 살충제 잔존물의 최대 허용치 역시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상당수의 물질들에 대해서 독일은 자체 국가 허용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단일시장원칙에 따라 EU회원국 중의 한 국가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식품들은 해당 국가에서 성분에 대한 보건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통합이 되지 않은 규정에 해당되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승인에 대한 개별적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독일 식품 기본법의 제47조 a항 LMBG).

독일식품법은 기타 특수식품 또는 식품군 법률 및 규정들은 물론이고 식품표시조례, 포장 관련조례, 식이식품조례, 다양한 유전적 및 수의학 관련 요구사항 등과 같은

230여 개의 조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법의 조항들은 방대하며, 흔히 매우 복잡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종종 야기되기도 한다. 결국 독일 수입업자가 독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들에 대한 시장 판매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의 법률집행기관은 다른 EU국가에서와 같이 해외 제품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법 위반에 대하여 전적으로 독일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 수입업자가 식품법을 위반할 경우 이는 처벌 대상 범죄가 된다.

독일 식품법의 기본적인 규정들은 1997년 9월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Lebensmittel- und Bedarfsgegenstaendegesetz (LMBG)의 제61조에 명시되어 있다. 본 법안은 일반적인 식품 안전 및 보건 보호 관련 규정들을 정의하고 식품표시사항에 대하여 해설을 하는 한편 혐의가 있는 식품에 대한 검사, 강제 보관 및 압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수입된 식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들에도 적용된다.

독일 식품법은 연방 정부(German Laender)가 그 시행을 맡고 있는 연방 법률이며 이는 경우에 따라 특정한 주에서는 식품법에 대한 경미한 위반이 용인될 수 있어도 다른 주에서는 용인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각한 위반 사항은 모든 주에서 기소가 된다. 국내 및 해외 식품들은 무작위 시료채취를 통해 판매시점에서 정부 연구소들이 검사를 하게 된다.

독일의 정부 연구소는 금지 성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거래 관행과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제품의 일반적 특성을 평가한다. 원산지에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식품이 독일 식품법을 위반하고 공공 보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언론에게 통지하여 상표명, 수입업자 또는 생산자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 독일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식품 안전성 감시 시스템을 개혁하여 재정비 하였으며 그에 앞서 2001년에 이전의 연방 식품, 농업 및 임업부가 재편되어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책임을 맡았으며 현재는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 농업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 농업부는 독일 식품법 규정들의 준수를 감시할 책임이 있다.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청은 독립적인 고위 연방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위험 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 특히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청은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물질 및 제품에 대하여 그리고 식품 안전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청은 독일연방정부의 감시 체계의 마련 및 관리 그리고 계획은 물론이고 소비자 보건 보호 및 식품 안전성 분야와 관련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정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청은 영국에 소재한 유럽 식품 및 수의학 담당국이 실시하는 검사의 전 단계에 있어 조정자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검사들에 참여한다.

독일의 경우 식품에 대한 제품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경우에 있어, 독일 검사 기관들은 통관 시점에서 수입업자에게 성실하게 수입업자의 법률적 의무를 충족하도록 수입된 식품의 추가 검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업자는 수입업자의 제품에 불법 물질이나 잔존물이 없음을 검사하기 위하여 민간 식품 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여야만 할 수도 있다. 독일 수입업자들은 흔히 공식적 인증을 획득한 식품 연구소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나. 독일의 식품표시제도

독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독일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독일의 식품표시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표시 중의 하나라도 누락이 될 경우 해당 식품은 판매가 금지될 수 있으며 모든 식품에는 독일어로 표시가 되어야 하며 다국어로 표시 및 그림 표시 삽입은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 감미료만을 사용한 또는 여러 과일을 사용한 쥬스의 경우 그림은 그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하는 과일 그림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식품에 함유되지 않은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정 식품 또는 식품군에 대한 특수한 표시요구사항들은 이외에도 많이 있다.

표지 혹은 그림 상의 실제 글자 크기 및 여러 요소의 배치와 같은 다른 여러 요구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자 및 수출업자들은 독일 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접착식 표지를 독일에서의 시험 판매 단계에서 소량에 붙여 사용해 보는 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독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표시사항은 독일어로 표시가 되어야 하며 Lebensmittel-Kennzeichnungs-verordnung(LMKV-식품표시조례 1999년 12월)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유형 명칭

이는 법률 또는 판매되는 식품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는 관습적인 명칭에 따른 명칭 또는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제품들과 구별 짓기 위한 구체적인 정확한 식품유형 명칭이 될 수 있다. 명칭은 명칭 또는 설명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거래상표 또는 기발한 착상에 따른 명칭들이 허용되지만 식품유형 명칭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식품유형 명칭, 수량 및 최소 보존 기간 표시(또는 이에 대한 언급) 모두를 동일한 공간에 표시하여야 한다.

▶성분 및 식품 첨가제 목록

성분 목록은 'Zutaten'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여야 한다. 성분은 생산 당시 사용된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농축 또는 건조 형태로 사용된 성분들과 식품의 요리 과정에서 물에 첨가하는 것들은 물에 넣었을 때의 상태로 표시할 수 있다.

특정성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칭 대신 그들이 속한 범주 그룹의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의 예로는 올리브 오일을 제외한 정제된 식물성 오일, 정제 지방, 혼합 소맥분, 전분, 생선, 치즈, 향신료, 허브, 고무 베이스, 빵가루, 설탕, 포도당, 물엿 시럽, 유단백질, 코코아 버터, 결정화된 과일, 야채 및 포도주 등이 포함된다. 색소에 대한 나열 순서는 자유롭게 나열하여도 무방하다.

▶성분의 양 표시

표지 내에 성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특히 강조를 할 경우 식품명 옆 또는 성분 목록의 성분명 주위에 최소량을 %로 표시하여야 한다.

▶알코올 함유량

20℃에서 측정할 때 1.2%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 음료들을 알코올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평문으로 표시한 최소 보존 기간

“해당 제품이 적절한 보존 상태 하에서 최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를 의미하며 사용되는 용어는 ‘Mindestens haltbar bis...’이며 최소 보존 기간의 결정은 전적으로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최소 보존 기간 표시는 신선한 과일 및 채소, 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인 알코올 음료수, 한 번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사람 수에 따라 나누어진 아이스크림, 식용염, 결정화 설탕, 맛이 첨가된 또는 색소가 첨가된 설탕 캔디, 껌, 와인과 같은 음료수 등에는 할 필요가 없다.

미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저장 기간 이후에는 보건상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verbrauchen bi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평문으로 최종 사용 가능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저장 조건

모든 특수 저장 조건 또는 사용 조건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 방법 역시 필요할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한다.

▶모든 치수에 대하여 미터법으로 표시

미리 포장된 식품의 순수 함량(중량)을 (리터, 센티리터, 밀리리터, 킬로그램 또는 그램 등) 미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상호와 주소

생산자, 포장업자 또는 독일/EU로 수입한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암호화된 로트 식별 표시

월/일 표시를 포함한 최소 보존 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는 암

호화된 제조번호구별표시가 필요하다.

표시는 표지상에서 다른 표시들과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L’이라는 글자 뒤에 하면 된다.

▶바 코드

독일은 13자리로 된 “국제 품목 번호(IAN) 시스템” 이라고도 불리는 유럽 품목 번호(EAN)을 사용하고 있다.